
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신보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7. 9.

발 의 자 : 신보라 · 박명재 · 이철규
추경호 · 강석진 · 이종배
정유섭 · 송희경 · 홍일표
강길부 · 하태경 · 이완영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성인보다 호흡 수가 더 많으므로 대기오염에 따른 악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따라서 이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, 권고기준 등의 조항에 대하여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, 어린이,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2항).
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제1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제1항제12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5조, 제6조, 제10조, 제16조에 관하여는 규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적용대상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(적용대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1항제1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제1항제12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5조, 제6조, 제10조, 제16조에 관하여는 규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
제5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제5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----. 이 경우 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</u>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